

"희망의 새 시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문 배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우수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부도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대상자들에게 (외국인 교수 및 연구원) 안내문을 배포하여 귀화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문 1부. 끝.

대구출입국관리사



수신자 계명대학교총장(교무과장),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교무과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교무과장), 대구대학교총장(교무과장), 영남대학교총장(교무과장), 가야대학교총장(교무과장), 경운대학교총장(교무과장), 경일대학교총장(교무과장), 경주대학교총장(교무과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교무과장), 김천대학교총장(교무과장), 대구외국어대학교총장(교무과장), 동국대학교총장(교무과장), 동양대학교총장(교무과장), 안동대학교총장(교무과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교무과), 한동대학교총장(교무과장)

출입국관리주사 박영신 관리과 과장 오주호 전결 03/20

협조자

시행 관리과-2120 (2015. 03. 20.) 접수

우 701-040 대구 동구 동촌로 71(검사동 1012-1)

/ <http://www.moj.go.kr>

전화 053-980-3539

전송 053-980-3580

/ parkyj42@moj.go.kr

/ 비공개(5,7)

우수 외국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문



2015. 3.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제도 취지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 적용 대상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특별귀화) 및 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

※ '13. 9. 15.부터 우수인재 평가 기준을 동포·비동포로 이원화, 동포에게는 1/2수준으로 기준 완화

□ 신청 절차

-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특별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 ⇒ 귀화 및 국적회복허가 요건 확인 및 국적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귀화 및 국적회복허가 통보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주민등록신고

□ 기타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32~3)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붙임]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001호)

● 법무부고시 제2015-001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1. 목적

이 고시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인재 선정심사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우수인재 심의대상

가.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영 제6조제2항제1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영 제6조 제2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 체육회 회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다. 그 밖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 참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3. 우수인재 심의·의결 기준

가.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별표 1(동포) 및 별표 2(비동포)와 같으며 국제심의회위원회는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함

나. 법무부장관이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심의회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별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별표 1]

우수인제 평가기준(동포)	
소 속 분 야	평 가 기 준
1. 과학,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u>2년 이상</u>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u>2년 이상</u>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 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소 속 분 야	평 가 기 준
3. 경영·무역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u>세계 500대 기업</u>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u>2년 이상</u>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u>미화 200만 달러</u>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4. 첨단기술 분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u>2년 이상</u>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u>국민총소득(GNI) 3배</u>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이 <u>1억원</u>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u>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u>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u>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트웨어</u> 관련 기술을 말함
5. 공통사항	노벨상, 풀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비동포)	
소 속 분 야	평 가 기 준
1. 과학,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 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5배 이상)

소 속 분 야	평 가 기 준
3. 경영·무역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우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인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4. 첨단기술 분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소득이 3억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u>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u>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말함
5. 공통사항	노벨상, 풀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